

1. 순천 농민운동의 배경

순천사회는 이미 조선 말 민란과 농민봉기의 와중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순천부(順天府)는 많은 인구에 비해 바다와 산지에 둘러싸인 협소한 경지밖에 가지지 못한 고을이었다. 이에 더하여 토지소유의 불평등, 군정(軍政) 등 세정(稅政)의 문란, 궁가(宮家)의 토지점탈, 이서배(吏胥輩)들의 부정과 농간이 극심하기로 소문난 지역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1862년 농민봉기가 삼남을 휩쓸었을 당시 순천에서도 이마에 흰 띠를 두르고 죽창을 든 3,000여 명의 농민이 봉기하여 부사(府使)에 대해 환곡(還穀)과 징세의 문란을 추궁하는 한편 신·구이방 등을 처벌하고 장부를 불태웠는데, 그 조직력과 신속도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후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도 순천은 주요한 전장(戰場)의 하나가 되었다. 향토사는 당시 순천을 둘러싼 공방에 참여한 농민군의 규모가 1만여 명에 달하였다고 전한다. 당시 순천은 중요한 토포(土布) 생산지역의 하나로서 토포 생산에 종사하는 호수가 무려 8,400에 달하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투에 따라 외국산 면포(綿布)가 대량 유입되자 토포 생산이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 저항의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¹⁾ 작은 규모의 농민봉기는 그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주암의 조병양(趙秉良)이 주도한 1902년의 의거가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다.

순천지역은 합방을 전후한 전남의 의병항쟁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보성의 안규홍(安圭洪) 부대가 이 지역에 자주 출몰했음은 물론 순천에서도 송광의 조규하(趙圭夏), 쌍암의 강진원(姜振遠)을 비롯한 의병장이 배출되었다. 의병항쟁은 일제에 대한 저항이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여파가 큰 사건이었다. 몰락한 양반과 농민들로 구성된 의병은 지주경영의 순조로운 전개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일제와의 공방을 통한 지역의 전장화(戰場化)는 지주제의 안정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제반 질서의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지주제를 애로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일제는 의병을 진압한 후 대대적인 지방통치기구의 보수와 재편을 통해 50년 이상 계속된 농촌사회의 격심한 동요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다. 조선에 면제(面制)를 도입하여 면에 통치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마을 사회를 통제의 그물망 속에 편입하였다. 순천읍에는 옛 작청(作廳)의 위치에 새로이 군아(郡衙)가 마련되고, 선비들이 사용하던 양사재(養士齋)는 순천수비대의 관사로 바뀌었다. 옛 장교청(將校廳)이 해체된 자리에는 순천구재판소(順天區裁判所)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통치권력이 재정비됨에 따라 주춤했던 일본인의 토지투자가 급속도로 재개되었다. 일본인의 토지매입은 이미 합방 이전부터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었다. 교통이 불편한 전남 동부지역은 전북이나 전남 서부에 비해 진출이 다소 늦었으며 의병항쟁이 진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질서가 회복되고 미곡 수송의 편의가 도모됨에 따라 투자 욕구가 크게 자극되었다.

이미 합방 전에 진출을 시작한 삼곡마길(森谷馬吉, 1908), 삼곡무차랑(森谷武次朗, 1909)에 이어 전남 동부지역 최대의 일본인 지주로 부상하게 되는 금곡일이(金谷一二, 1911)가 토대

1) 이상 망원한국사연구실, 『1862년 농민항쟁』, 동녘, 1988, 308~312쪽; 馬淵貞利,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치」, 『동학혁명의 연구』, 백산서당, 1982, 291~294쪽; 梶村秀樹, 「李朝末期 綿業의 流通 및 生産構造」, 『韓國近代經濟史研究』, 사계절, 1983, 144쪽; 순천문화원, 『順天昇州 鄉土誌』, 1975, 64쪽.

를 마련하였으며 근본내기(根本內記, 1911), 서산청길(西山淸吉, 1911), 중야청구랑(中野淸九郎, 1917), 웅본성길(熊本盛吉, 1919) 등도 진출을 서둘렀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물론 자하선농주식회사(滋賀鮮農株式會社, 1911), 조선토지주식회사(1916) 등 소작료획득과 토지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도 투자를 본격화했다. 금곡상회(金谷商會, 1917), 삼곡농장(森谷農場, 1919) 등 개인 지주들이 간판으로 내세우기 위해 설립한 회사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 기반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전히 일본인 토지투자자들에게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일 만한 곳은 아니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리조건으로 말미암아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하는데 제약이 뒤따랐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순천면과 벌교 등 교통과 편의시설이 구비된 곳에 거점을 한정하고 그 방면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여타 지역에서는 토착 지주들에 비해 우세를 점할 수 없었다. 토착 지주들은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해가는 양반층과 영세자작농의 토지를 겸병함으로써 소유규모를 가속적으로 확대해갔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 대지주들의 면면과 소유규모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자료로는 50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들의 성명과 소유규모를 나열한 『천라북도(全羅北道)·전라남도지주조(全羅南道地主調)』가 가장 자세하다. 그 가운데 순천군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주들과 보성군 벌교에 거점을 둔 지주들을 추출해 다음의 표들을 작성했다. 1930년에 작성된 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사정은 농민운동이 전성을 구가한 1920년대 전반의 사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1920년대의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추측하는 데 크게 미흡하지 않다.²⁾

지주들이 소유규모를 확장해가고 있었던 반면, 많은 소작농들은 토지를 상실하고 자소작농으로, 자소작농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갔다. 1922년의 조사에 따르면 순천의 총호수 2만 1,600호 가운데 46.8%가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는 소작농과 농업노동자로 파악되었다. 자소작농은 32.5%를 차지하였고 전체 논 중 65%를 소작인이 경작하였다. 소유의 불균등은 1920년대를 일관하여 심화되어 1931년에 이르게 되면 소작농과 농업노동자가 전체의 61%를, 자소작농이 32.7%를 차지하게 되며 자작농은 4.6%에 불과하게 된다. 지주는 347명에 불과하였는데 그 중

2) 全羅南道, 『小作慣行調査書』, 1923, 89~90쪽. 1922년에 이르러 전남에는 33명의 개인 또는 회사가 200정보 이상의 경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순천의 김학모와 그의 두 아들 종익·종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명부는 정확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고 생각된다.

순천 소재 50정보 이상 소유 한국인 지주

(1930. 현재, 단위 : 정보)

지주	논	밭	기타	계
김종익(金鍾翊)	825	47	255	1,127
박창서(朴彰緒)	283	11	109	403
서병규(徐丙奎)	207	7	140	354
김학순(金學洵)	140	14	171	325
김종필(金鍾弼)	306	10	1	317
최복철(崔福哲)	233	46	15	294
박승림(朴勝林)	176	9	23	208
정권현(鄭權鉉)	124	9	66	199
김재창(金再昌)	103	3	75	181
최복선(崔福先)	158	1	16	175
우기환(禹沂桓)	110	12	47	169
우규환(禹珪桓)	70	16	67	153
김회산(金會山)	132	5	5	142
김봉각(金奉珪)	65	2	74	141
박승직(朴勝稷)	76	4	54	134
우종환(禹鍾桓)	53	21	57	131
성정수(成禎洙)	79	4	39	122
김병옥(金丙玉)	77	5	26	108
김종주(金從柱)	55	3	48	106
임종춘(林鍾春)	52	8	38	98
조기호(趙基昊)	67	7	3	77
조중윤(趙重潤)	43	7	3	53

출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지개척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명부』, 1985, 201~202쪽.

별교 소재 50정보 이상 소유 한국인 지주

(1930. 현재, 단위 : 정보)

지주	논	밭	기타	계
김병옥(金炳旭)	359	72	46	477
최재학(崔在鶴)	140	17	141	298
서화일(徐和日)	122	27	133	282
박사윤(朴士潤)	146	35	43	224
채중현(蔡重鉉)	70	12	79	161
임정석(任正錫)	143	6	0	149
고천수(高天受)	74	7	23	104
박재소(朴在素)	60	4	33	97
박문협(朴文俠)	60	10	14	84
윤득수(尹得洙)	62	3	14	79

출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지개척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명부』, 1985, 202~203쪽.

95명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소작료 징수에 의존하고 있었다. 소작지는 전체 경지의 64%, 전체 논지의 69%에 달하였다.³⁾

자작농의 몰락, 소작농의 궁핍은 여러 가지 사정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1920년대에 전개된 산미증식계획은 쌀의 증산을 위해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비료를 다량으로 투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국은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강요했다. 이러한 쌀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농민의 경작비용이 상승하고 발농사가 희생되었다. 순천의 경우 이미 면화 재배와 토포 생산이 타격을 받아 쌀 이외의 생산이 줄어든 형편이었다. 더욱이 주세령(酒稅令)과 연초세령(煙草稅令)으로 술과 담배의 생산이 허가와 과세의 대상이 되어 술을 빚고 담배를 경작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1921년 담배가 전매의 대상이 됨에 따라 담배 경작이 한층 제약을 받게 되었다. 농민이 현금을 얻기 어려웠던 반면 많은 것을 시장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현금 수요는 증가하였다. 쌀이 중요한 현금수입원이었지만 경작규모가 영세하고 쌀의 유통을 지주와 미곡상들이 장악하고 있어 쌀을 팔아 돈을 버는 것도 제한되었다. 결국 농가의 부채가 늘어감에 따라 토지를 방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소작농이 누적돼갔다.

한편 소작인들은 생산성의 증대를 훨씬 상회하는 소작료율의 증가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말 순천의 평균소작료 수준은 수확의 1/3 가량에 불과했으나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5할을 훨씬 넘어섰다. 더욱이 지세령(地稅令)에 따라 지주의 지세부담 원칙이 선언되었는데도 대다수의 지주가 지세의 납부를 소작인에게 전가하여, 소작인은 소작료 외에도 수확량의 약 10% 가량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그만큼 늘어난 소작료를 지불해야만 하였다. 한말에도 소작인이 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당시의 지세 수준은 비교적 낮아 소작료와 지세를 합하여 수확의 37%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 1920년대 농민들의 주장이다.⁴⁾ 지세부담의 문제는 1920년대의 소작쟁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3) 전라남도, 『소작관행조사서』, 1923, 17~18·101쪽; 全羅南道, 『全南の米』, 1932, 190·195·200쪽.

4) 『동아일보』 1923. 11. 6·1923. 11. 13.